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50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김소희·김은혜·김미애
김기현·박준태·서일준
안상훈·김선교·박덕흠
엄태영·김예지·김상훈
우재준·성일종·조경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

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제37조의3(감시·예측 정보와 조</u> <u>사·연구 결과의 활용) 정부는</u> <u>「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u> <u>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u> <u>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u> <u>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u> <u>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u> <u>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u> <u>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u> <u>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u> <u>여야 한다.</u>